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환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2
----------	----

발 의 년 월 일: 2022년 08월 29일

발 의 자: 박환희,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옥,
김용일,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 석,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복자, 심미경,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이상욱,
이숙자,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최민규,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45명)

1. 제안이유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및 서울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소속의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등을 다각화하여 더 많은 학생과 청소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서울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지급 사업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등이 학생 및 청소년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상위 법률 제명 변경 등에 따른 용어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제명 등을 변경함(안 제2조제1호라목).

나. 장학금의 신청 시 장학금 지원 사업에 따라 관련 학교장 또는 교사, 자치구, 대학교수, 기관 또는 단체장,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청소년 기본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용어의 정의)”를“(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뜻은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
분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초·중등 교육법」
제2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근로자직
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
1호”를 “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학금의 신청 시 장학금 지원 사업에 따라 관련 학교장 또는 교사, 자
치구, 대학교수, 기관 또는 단체장,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등의 추천서를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5항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학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p> <p>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p> <p>나·다. (생략)</p> <p>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p> <p>2.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p> <p>제5조(사업) ① (생략)</p> <p>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생략)</p>	<p>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같다. ----- -----.</p> <p>1. -----이란 ----- ----- -----.</p> <p>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 -----</p> <p>나·다. (현행과 같음)</p> <p>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 ----- ----- ----- ----- ----- -----</p> <p>2. -----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 -----.</p> <p>제5조(사업) (현행 제1항과 같음)</p> <p>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p>

<신 설>

② (생 략)

제9조(임원) ① ~ ④ (생 략)

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⑥ (생 략)

② 장학금의 신청 시 장학금 지원 사업에 따라 관련 학교장 또는 교사, 자치구, 대학교수, 기관 또는 단체장,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9조(임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

⑥ (현행과 같음)

문서번호

2022081600000002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박환희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류동균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2.08.16.

회신일 : 2022.08.22.

내용문의 : 02-2180-7952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장학금의 신청 시 장학금 지원 사업에 따라 관련 학교장 또는 교사, 자치구, 대학교수, 기관 또는 단체장,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개연성이 있는 예산의 추계는 기술적으로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제1항제2호)

- 서울시 평생교육국은 저소득층 고교생, 대학생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과 우수 학생을 발굴·육성하기위해 서울장학재단에 서울장학지원사업을 위탁 운영중이며, 2022년 9,512,297천원의 출연금으로 운영 중임
- 서울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지급 사업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등이 학생 및 청소년을 추천할 수 있도록함에 따라 소요 예산이 증대될수 있으나, 이는 예산 과정에서 정치적·정책적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경제적·합리적 비용추계는 어려움
- 또한 2021년도 사업예산에서 장학 지원사업 예산에서 일부 불용이 발생하였고, 이는 국가 및 민간 장학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중복시 서울시 장학금을 포기한 때문이며, 서울장학재단에서 2022년 정보화 사업 강화 등으로 신규 장학수요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장학 지원 증대의 가능성도 있으나, 이에 대한 기술적 추정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과장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팀장

분석관(주무관) 류동균 분석관

☎ 02-2180-7952

e-mail : rooster72@seoul.go.kr